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 28 기 정기)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17 조에 근거하여 제 28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제 28 기(2022.1.1~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 당 배당금 60 원)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부 1]**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 2 조)

제 2-2 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 (제 37 조, 제 37 조의 2)

제 2-3 호 의안: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제 3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첨부 2]**

제 3-1 호 의안: 배재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제 3-2 호 의안: 정신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2년)

제 3-3 호 의안: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 3-4 호 의안: 신선경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 3-5 호 의안: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 4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석, 2년) **[첨부 3]**

제 5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4]**

제 5-1 호 의안: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제 5-2 호 의안: 신선경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제 6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 억원)

제 7 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첨부 5]**

제 8 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첨부 6]**

제 9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 9-1 호 의안: 등기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 9-2 호 의안: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공고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익개서대행회사(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사항

1)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서류인 위임장을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에이동 14 층, 카카오 IR 운영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29)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6 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8일 9시 ~ 2023년 3월 2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 에서 사용가능한인증서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 11 조 제 3 항)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

-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사항

1) 코로나 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신 주주분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 밀집 · 밀접)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와 주주 및 관계자 분들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홍은택

명의개서대리인 KB 국민은행장 이재근

[첨부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 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 조 (목적)</p> <p>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9. <u>일반여행업</u></p> <p>(중략)</p> <p>(신설)</p> <p>33.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p>	<p>제 2 조 (목적)</p> <p>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9. <u>종합여행업</u></p> <p>(중략)</p> <p>33.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p> <p>34.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p>	<p>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p> <p>신규 사업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가</p> <p>조항 번호 변경</p>

제 2-2 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제 37 조, 제 37 조의 2)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37 조 (이익배당)</p> <p>3. <u>제 1 항의 배당은 제 13 조 제 1 항에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p>	<p>제 37 조 (이익배당)</p> <p>3. <u>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p>
<p>제 37 조의 2 (중간배당)</p> <p>1.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6 월 30 일 24 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u></p> <p>2. <u>제 1 항의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3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제 37 조의 2 (중간배당)</p> <p>1.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u></p> <p>2. <u>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중간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여 중간배당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p> <p>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p>

제 2-3 호 의안: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부칙)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부칙</p> <p>(신설)</p>	<p>부칙</p> <p>·이 정관은 2023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신설</p>

[첨부 2] 이사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배재현	1980-05-09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정신아	1975-02-28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최세정	1971-07-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선경	1974-11-22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새롬	1990-02-2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	<학력사항> 2004 년 <경력사항> 2004 년 ~ 2015 년 2015 년 ~ 2018 년 2018 년 ~ 2020 년 2020 년 ~ 2023 년 2023 년 ~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CJ(주) 미래전략실 부장 카카오 빅딜팀장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CIO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학력사항> 1997 년 2000 년 2006 년 <경력사항> 2000 년 ~ 2007 년 2007 년 ~ 2009 년 2010 년 ~ 2013 년 2014 년 ~ 2018 년 2018 년 ~ 현재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경영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석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 MBA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eBay APAC HQ 전략매니저 엔에이치엔(주) 수석부장 (주)카카오벤처스 상무, 파트너 (주)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학력사항> 1994 년 1998 년 2002 년 <경력사항> 2002 년 ~ 2011 년 2017 년 ~ 2020 년 2019 년 2019 년 ~ 2020 년 2019 년 ~ 2021 년 2011 년 ~ 현재 2021 년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광고학 석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매스미디어(광고) 박사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광고학과 조교수, 부교수 JTBC 미디어컴(주) 사외이사 한국광고학회 부회장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한국광고홍보학보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주식회사 지투알 사외이사/ ESG 위원회 위원장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학력사항> 1999 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2001 년	사법연수원 수료(30 기, 사법시험 제 40 회 합격)
		2002 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7 년	미국 Stanfo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2008 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경력사항>	
		2001 년 ~ 2016 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금융파트)
		2011 년 ~ 2016 년	유수 법률 간행물인 Chambers Asia Capital Markets 분야 Leading Individual 등재
		2016 년 ~ 현재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2022 년 ~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 년 ~ 현재	MBC 인사위원회 위원
		2022 년 ~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박새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학력사항>	
		2013 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학사
		2018 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경력사항>	
		2018 년 ~ 2019 년	서울대학교 수학기반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연구원
		2019 년 ~ 2023 년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첨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석	1962-03-06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윤석	(주)윤앤코 대표이사	<학력사항>	
		1985 년	연세대학교 경영학
		1987 년	MBA, NYU 경영대학원
		<경력사항>	
		1988 년 ~ 1993 년	KPMG New York, Audit Manager
		1997 년 ~ 2011 년	크레딧스위스증권(한국) MD/리서치센터장
		2011 년 ~ 2014 년	삼성증권 전무, 홀세일본부장/리서치센터장
		2015 년 ~ 2016 년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액티브운용총괄
		2017 년 ~ 2018 년	삼성액티브자산운용(부사장) 대표이사
		2019 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비상근 고문
		2020 년 ~ 현재	(주)윤앤코 대표이사
		2020 년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첨부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세정	1971-07-03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선경	1974-11-22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학력사항>	
		1994 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1998 년	미시건 주립대학교 광고학 석사
		2002 년	미시건 주립대학교 매스미디어(광고) 박사
		<경력사항>	
		2002 년 ~ 2011 년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광고학과 조교수, 부교수
		2017 년 ~ 2020 년	JTBC 미디어컴(주) 사외이사
		2019 년	한국광고학회 부회장
		2019 년 ~ 2020 년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2019 년 ~ 2021 년	한국광고홍보학회 편집위원장
2011 년 ~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2021 년 ~ 현재	주식회사 지투알 사외이사/ ESG 위원회 위원장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학력사항>	
		1999 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2001 년	사법연수원 수료(30 기, 사법시험 제 40 회 합격)
		2002 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7 년	미국 Stanfo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2008 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경력사항>	
		2001 년 ~ 2016 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금융파트)
		2011 년 ~ 2016 년	유수 법률 간행물인 Chambers Asia Capital Markets 분야 Leading Individual 등재
		2016 년 ~ 현재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2022 년 ~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 년 ~ 현재	MBC 인사위원회 위원		
2022 년 ~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첨부 5] 자기주식 소각의 건

1. 자본감소의 방법

소각방법	자본금 감소 (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액면가액	100 원 (1 주당 액면가액)
소각대상	소각 방법 : 자본금 감소 (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액면 가액 : 100 원 (1 주당 액면가액) 소각 대상 : 주식회사 카카오와 구) 주식회사 카카오엠의 합병 시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엠 주식 일부에 배정된 합병신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등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2. 자본감소 일정

구분	관련일정	비고
주주총회 예정일	2023년 3월 28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3년 3월 29일 ~ 2023년 5월 2일	-
효력발생일	2023년 5월 3일	-
변경상장 예정일	2023년 5월 18일	-

3. 자본감소 대상 주식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효력발생일	감자전 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 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1,897,441 주	0.43%	2023년 5월 3일	44,608,842,800 원 (445,588,428 주)	44,419,098,700 원 (443,690,987 주)

[첨부 6]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8 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 조 (지급대상)</p> <p>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 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p> <p>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 <u>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u></p> <p>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u>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이사</u>로 한다.</p> <p>4. 전항의 "<u>계속근로기간</u>"은 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u>퇴직하는 때까지</u>를 의미한다.</p> <p>5. 이사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u>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u>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p>	<p>제 2 조 (지급대상)</p> <p>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p> <p>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u>지급하지 않는다.</u></p> <p>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u>계속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이사</u>로 한다.</p> <p>4. 전항의 "<u>계속재임기간</u>"은 이사로 선임된 때부터 <u>퇴임하는 때까지</u>를 의미한다.</p> <p>5. 이사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u>퇴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계속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임하였을 때</u>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p>	<p>단순 수정</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3 조 (지급사유)</p> <p>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p>제 3 조 (지급사유)</p> <p>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인한 퇴임 	<p>단순 수정</p>						
<p>제 4 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금은 <u>계속근무기간 1년</u>에 대하여 평균임금 30 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사의 퇴직일로부터 14 일을 경과하지 않는다. 	<p>제 4 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금은 <u>계속재임기간 1년</u>에 대하여 평균임금 30 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임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u>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에 [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을 직책 별 재임기간에 따라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u>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은 <u>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일 내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와 지급대상 이사의 합의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u> <p>[표 1]퇴직금 지급률</p> <table border="1" data-bbox="655 1440 1190 1588"> <thead> <tr> <th>직책</th> <th>지급률</th> </tr> </thead> <tbody> <tr> <td>대표이사</td> <td>3 배수</td> </tr> <tr> <td>대표이사 외</td> <td>1 배수</td> </tr> </tbody> </table>	직책	지급률	대표이사	3 배수	대표이사 외	1 배수	<p>지급일 구체화</p>
직책	지급률							
대표이사	3 배수							
대표이사 외	1 배수							
<p>제 5 조 (특별공로금)</p> <p>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가 퇴직할 때에는 이사회 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 4 조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5 조 (특별공로금)</p> <p>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가 퇴임할 때에는 이사회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 4 조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단순 수정</p>						
<p>(신설)</p>	<p>제 6 조(지급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가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 퇴임한 경우 	<p>지급제한 규정 신설</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② <u>재임 중에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u></p> <p>③ <u>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u></p> <p>2. <u>회사는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무죄 또는 벌금형 미만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u></p>	
<p>제 6조 (규정의 개폐)</p> <p>본 규정의 개폐는 <u>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u></p>	<p>제 7조 (규정의 개폐 및 개정)</p> <p>본 규정의 개폐 및 <u>개정</u>은 <u>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u></p>	<p>조항 번호 변경 및 단순 수정</p>
<p>제 7조 (기타)</p> <p>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u>이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u>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p>	<p>제 8조 (기타)</p> <p>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p>	<p>조항 번호 변경 및 단순 수정</p>
<p>[부칙]</p> <p>1. <u>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2. <u>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u></p> <p>3. <u>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u></p>	<p>[부칙]</p> <p><u>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u></p> <p><u>단, 제 4조 2. 및 [표 1]의 대표이사 지급률에 관한 부분은 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선임되는 대표이사부터 적용하며, 현재 재임 중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현재 재임 중인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u></p>	<p>대표이사 지급률 경과 조치를 포함한 부칙세부 조항 신설</p>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3월 2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서 _____(을)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1. 주주번호 : _____
- 2. 소유주식수 : _____ 주
-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_____ 주
- 4. 위임할 주식수 : _____ 주
-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의 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 성	반 대
제1호 의안	제 28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6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조)		
		2-2.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제37조, 제37조의2)		
		2-3.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부칙)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5인)	3-1 배재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3-2 정신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2년)		
		3-3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3-4 신선경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3-5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석, 2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5-2 신선경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억원)			
제7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8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9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9-1 등기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9-2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6. 기타 사항(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등)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 주 명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 임 일 자 및 위 임 시 간 : 2023년 월 일 시

※ 찬성, 반대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으며, 위임 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만 유효합니다.